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시행(2005. 3. 18)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관련 조항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2)
- 나. 2005.7.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1~2일)함 (안 제18조)
- 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지정 (안 제30조)

III. 검토의견

- 국민소득 향상과 국민정서의 선진화에 따라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한 이래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되고 그 시행시기가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우선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고,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주5일근무제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각급 일반행정기관에 대해 주5일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40시간근무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등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5. 3. 18, 대통령령 제18739호)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복무조례 개정지침 및 표준조례안에 의거 통일적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2(비밀엄수)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2004년 6월 24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 신설(제4조의2)된 예에 따라 추가한 사항이고,
- 안 제18조제1항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1~2일 축소 조정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전 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 기타 안 제29조제1항 및 안 제31조(공무원의 범위)의 조문내용 일부삭제 및 신설내용은 종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동 내용이 새로 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통합됨에 따라 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여가시간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가선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종래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 여가문화로 변화되어 가족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으며, 한편으로는 문화·관광·레저 등 여행과 문화비용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상품에 대한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우리 구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의 생산성·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연구하고, 어학·동호회·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직원능력 개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 ③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2條 (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第57條 (政治運動의 금지) ①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關係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정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39호)

제6조 (토요일휴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3	6	9	12	14	17	20	21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부칙 <제18739호, 2005. 3. 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의2 (비밀업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 (토요일휴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3	6	9	12	14	17	20	21

부칙 <제18438호, 2004.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第49條 (勤勞時間) ①1週間の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 9. 15>

②1日の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6974호, 2003.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